

## 2025년 어업기반정비사업(양식어장자동화시설장비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2025년 어업기반정비사업(양식어장자동화시설장비지원) 대상자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을 이행한 양식업자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자

### 2. 지원 대상 사업

연번	사업명	지원규모	사업추진 기간	접수·문의처
1	어업기반정비 (양식어장자동화시설장비지원)	956,250천원 (보조 765,000, 자담 191,250)	2025. 1월~12월	수산정책과 (710-3233)

- 지원내용 : 비상발전기, 해수펌프, 사료혼합기, 전동지게차 등 완제품(중고품, 조립품, 소모품은 제외)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보조금 24,000천원 이하 지원
  - ※ 단, 각 경영체 대표가 동일한 경우 1건에 한하여 지원
  - 지원율 : 지방비 80%, 자부담 20%

###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5. 1. 16.(목) ~ 2025. 1. 31.(금)(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 관련서류 구비 후 직접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제주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본관 2층)

○ 신청서류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1), 지원신청서(서식 2), 사업계획서(서식 3) 각 1부
- 세부내역이 포함된 견적서 1부(건별 2백만원 이상의 경우 타인견적 포함)
- 법인 등에 대한 단체소개서(서식 4) 및 정관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 5)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단체) 의사결정 회의록, 조합원 등 구성원 명부(해당하는 경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HACCP) 등록증,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방역교육 이수증(2023~2024년)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경우)
- 어업 면허·허가증 사본, 어업경영체등록증 사본, 계통출하증명서(2024. 1. 1. ~ 12. 31., 1년간) 원본 각 1부
  - ※ 계통출하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양식수산물(종자) 출하(판매)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제출
-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 문의처 : 수산정책과 양식산업팀 ☎ 064)710-3233

※ 신청서류 서식은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www.jeju.go.kr > 입법·고시·공고) 참조

4.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1차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4조에 따른 위해요소(양식)중점관리기준(HACCP) 이행 등록시설**

**2차 : 1차 우선순위 결정 후 동일순위의 경우 아래 순으로 결정**

- ① 재해 예방을 위한 액화산소탱크, 비상발전기
- ② EP사료용 사료혼합기, 자동급이기
- ③ 사육수 관리 위한 해수살균기(오존, 자외선 등), 펌프 등 장비
- ④ 그 외 양식용 장비

**3차 : 1~2차 우선순위 결정 후 동일순위의 경우 아래 순으로 결정**

- ① 허가받은 수면적이 작은 양식장

< 위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순위로 함 >

- 사업자 모집 공고일 현재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이나,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양식장
- 2022~2024년 아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양식장
  - 어업기반정비사업(양식어장자동화시설장비지원)
  - 양식장 인력절감 자동화 장비 지원사업

※ 미지원 → 2022년 → 2023년 → 2024년 사업자 순으로 하며, 2024년 어업기반정비사업 사업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자를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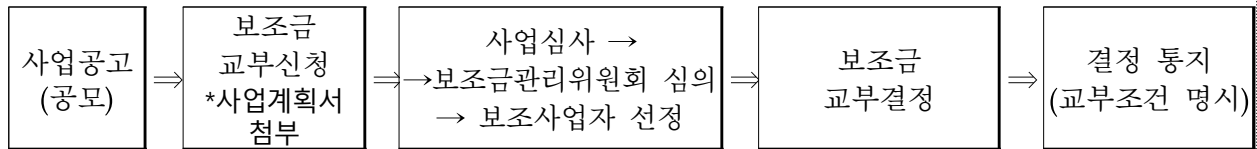
## 5. 지원 제외대상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아래와 같이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1.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7조에 따라 사업을 중복 수급한 경우
2.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
3.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역교육 이수하지 않은 자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2023~2024년)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
6. 전년도 사업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회계연도 내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여 사업비가 불용되는 경우

## 6.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심사기준 : 사업의 적합성, 과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수산정책과)

(보조사업자)

(수산정책과, 예산담당관)

(수산정책과)

(수산정책과)

## < 유 의 사 항 >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자부담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와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아야 함
-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25년 어업기반정비사업(양식어장자동화시설장비지원)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 소재지(주 소) :

○ 전화번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양식어장 현대화 및 인력부족에 따른 자동화 장비 지원을 통해 양식 생산성 향상 지원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기 타
22,000	17,600	4,400	

5. 보조사업 기간 : 2025. 1. ~ 12.

6.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임 사업계획서 1부

2025년 1월 일

신청자(단체명 및 대표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2】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체명 (법인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선택)		
	소재지 (우편번호: - )		회원수 명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선택)		
주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신청내용	사업명		2025년 어업기반정비사업(양식어장자동화시설장비지원)		
	사업내용		0000구매 1대(규격 표시)		
	사업기간		2025. 1. ~ 12.		
	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천원)		2022년	2023년	2024년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p>「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5년 1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인)</p> <p><b>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b></p>					
<p>○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집 항목 :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li> <li>-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li> <li>- 보관·이용기간 :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li> <li>-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li> <li>-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체크)</li> </ul> <p>※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 기재(선택사항)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 기재)</p>					

【서식 3】

# 사 업 계 획 서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어업기반정비(양식어장자동화시설장비지원)
- 사업기간 : 2025. 1. ~ 12.
- 사업내용 : 사료혼합기(200kg) 구입 지원
- 대상시설

상호명	어업의 종류	품종
00수산	육상해수양식업 (육상수조식)	강도다리

경비총액 : 22,000천원(보조율 80%)

보조금액 : 17,600천원

자부담액 : 4,400천원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2025. 1. ~ 12.	○ 사료혼합기(200kg) 구입	

보조사업의 효과

- 어업경비 절감 및 경영 효율 제고로 양식어가 소득 향상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17,600	
어업기반정비 (양식어장자동화시설 장비지원)	자산및물품 취득비	17,600	사료혼합기(200kg) 22,000천원* 80%=17,600천원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4,400	
어업기반정비 (양식어장자동화시설 장비지원)	자산및물품 취득비	4,400	사료혼합기(200kg) 22,000천원* 20%=4,400원



【서식 5】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보조금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5. 1.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